

제2025-68호 2025년 7월 29일(화)	시 보  여수시	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
--	--	--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홍보담당관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

고 시

- 여수시 고시 제2025-361호 도로명 주소 부여·폐지

공 고

- 여수시 공고 제2025-2196호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- 여수시 공고 제2025-2203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
- 여수시 공고 제2025-2226호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여수시 공고 제2025-2234호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계획인가(안)을 위한 주민공람
- 여수시 공고 제2025-2235호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확정 알림
- 여수시 공고 제2025-2237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알림
- 여수시 공고 제2025-2240호 전문건설업 등록-주식회사신아이노텍
- 여수시 공고 제2025-2242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
- 여수시 공고 제2025-2244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
- 여수시 공고 제2025-2248호 도로점용허가(기간연장)내용(제2024-121-2호)
- 여수시 공고 제2025-2266호 공동주택 전가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공모(기간연장)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도로명주소 부여·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. 7. 25.

여 수 시 장 (인)

1. 도로명주소(부여·폐지) 내용

업무구분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고시일	이동사유	도로명고시일	부여사유	비고
별 지 기 재			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(☎061-659-3355 ~ 3357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.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3.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4.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공 고

「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22일

여 수 시 장

「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의 납부지연가산세(舊 중가산금)가 면제 되는 기준금액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 상향(안 제2조)
 - 1매당 세액 “30만원”을 “45만원”으로 변경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5. 입법 예고기간 : 2025. 7. 22. ~ 8. 11.(20일간)

6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수시장(세정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서면, 전자우편, 팩스 등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할 곳

- 보내는 곳 : 우편번호 59675/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
여수시청 세정과
- 전화번호 : 061)659-3527, 팩스번호 : 061)659-5815
- 전자우편 : kes0318@korea.kr

7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정과(☎061-659-352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

☐ 조례명 : 「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반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붙임 1**일부개정조례안**

여수시 조례 제 호

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후단 중 “30만원”을 “45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경우 1매당 세액이 <u>30만원</u>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.		제2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-----		

		---- <u>45만원</u> -----		

② · ③ (생략)	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	

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

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과 관련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7. 25.

여 수 시 장

1. 사업의 개요

- 사업기간 : **기정) 2020. 6.30. ~ 2025.12.31.**
변경) 2009. 6.30. ~ 2027.12.31.

사업의 종류 및 명칭(사업명)	사업예정지 (위치)	사업내용	사업시행자의 명칭 (성명) 및 주소
도시계획시설(도로) 월내이주택지 ~ 죽림택지 연결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(1공구)	안산동, 소라면 죽림리 일원	○ 면적 및 규모 - 면적: 16,188.0㎡ - 규모 - L= 515m, B= 8.0 ~ 15.0m(2차로)	여수시장/ 여수시 시청로 1

2. 공람장소, 공람기간

사 업 명	열람장소	열람기간
월내이주택지 ~ 죽림택지 연결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(1공구)	여수시 도로과	2025. 7. 25. ~2025. 8. 8.(14일간)

3.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

- 제출기간: 2025. 7. 25. ~ 2025. 8. 8. (14일간) ※**초일미산입**
- 제출방법: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

4. 토지 및 지장물조서: 붙임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(☎061-659-407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편입토지조서(변경)

연번	토지 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권리내용	성명	주소	
합계				58,661.0	16,188						변동 없음
1	안동	산 536	도	8,332	63	공	여수시				
2	안동	산 375-1	수	4,845	811	공	여수시				
3	안동	산16-16	임	13	13	김철영	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33,103동 4303(우동,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)				기정
	안동	산16-16	임	13	13	공	여수시				변경
4	안산동	산17-12	임	1,343	1,343	오승재	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14 롯데아파트 7동 302호				
5	안산동	372-2	전	19	19	김춘호 외12인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이원대로 449, 131동 101호(반림동, 노블파크아파트)				기정
	안산동	372-2	전	19	19	공	여수시	공유지 (28/1365)	김용수	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123번길 23-8, 3층 303호(쌍촌동)	변경
6	안산동	573-3	전	30	30	김철영	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 33, 103동 4303(우동,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)				
7	안산동	산21-1	임	1,052	1,052	이재규	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438				
8	안산동	591	대	724	724	김병선	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10, 118동 603동 (죽림사당으로부영1차)				기정
	안산동	591	대	724	724	공	여수시				변경
9	안동	614-4	전	1,739	1,739	김효수 외1인	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614				변경
	안동	614-4	전	1,739	1,739	공	여수시				변경
10	안산동	산51-31	임	292	292	김효수	여수시 안산동 614				기정
	안산동	산51-31	임	292	292	공	여수시				변경
11	안산동	647-5	구	397	397	국	건설교통부				기정
	안산동	647-5	구	397	397	공	여수시				변경
12	안동	산51-30	임	344	344	주식회사 하성	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남1길 16-4(신기동)				기정
	안동	산51-30	임	344	344	공	여수시				변경
13	안동	산51-33	임	1,096	1,096	김영실	여수시 둔덕동 471-1				기정
	안동	산51-33	임	1,096	1,096	공	여수시				변경
14	소면죽림리	94-4	대	81	81	최연옥	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306(가곡동)				기정
	소면죽림리	94-4	대	81	81	공	여수시				변경
15	소면죽림리	산79-3	도	5,909	225	공	여수시				
16	안동	532	도	2,465.7	15	공	여수시				
17	안동	산16-15	임	39	39	백태슬	전라남도 여수시 안산5길 9-13(안산동)				기정
	안동	산16-15	임	39	39	공	여수시				변경
18	안동	576-1	답	338	338	심상우	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18-4(안산동)				기정
	안동	576-1	답	338	338	공	여수시				변경
19-1	안동	590-1	대	17	17	서영주	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43-4 (안산동)				기정
19-2	안동	590-2	대	7	7	서영주	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43-4 (안산동)				기정
19-1	안동	590-1	대	17	17	공	여수시				변경
19-2	안동	590-2	대	7	7	공	여수시				변경

연번	토지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면적(㎡)	편입면적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권리내용	성명	주소	
20	안동 산	589-1	대	31	31	서영주	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43-4 (안산동)				기정
	안동 산	589-1	대	31	31	공	여수시				변경
21	안동 산	593-1	대	17	17	김병선	전라남도여수시죽림로10, 118동603동(죽림사탕으로부영1차)				기정
	안동 산	593-1	대	17	17	공	여수시				변경
22	안동 산	592-1	전	200	200	김병선	전라남도여수시죽림로10, 118동603동(죽림사탕으로부영1차)				기정
	안동 산	592-1	전	200	200	공	여수시				변경
23	안동 산	614-6	전	613	613	김옥경	전라남도 여수시 화산4길 75-5(화장동)				기정
	안동 산	614-6	전	613	613	공	여수시				변경
24	안동 산	614-5	전	172	172	지우승 외 1인	여수시 서교동 373				기정
	안동 산	614-5	전	172	172	공	여수시				변경
25	안동 산	613-1	전	143	143	김상철	안산리 563	전산 미등록			
26	안동 산	607-1	임	116	116	김해김씨도총관공파시목종중	전라남도 여수시 시전3길 16(신기동)				변경
	안동 산	607-1	임	116	116	공	여수시				변경
27	안동 산	611-1	답	147	147	김준환	260				기정
	안동 산	611-1	답	147	147	공	여수시				변경
28	안동 산	610	답	175	59	서영주	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43-4 (안산동)				기정
	안동 산	610-1	답	59	59	공	여수시				변경
29	안동 산	609-10	전	189	189	박정식	학동 7-7				기정
	안동 산	609-10	전	189	189	공	여수시				변경
30	안동 산	609-11	임	26	26	오정연	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7, 805동 1502호	근저당권 지상권	여수시조 여산합	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80-1(미평동)	기정
	안동 산	609-11	임	26	26	공	여수시				변경
31	안동 산	609-12	임	2	2	오정연	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7, 805동 1502호	근저당권 지상권	여수시조 여산합	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80-1(미평동)	기정
	안동 산	609-12	임	2	2	공	여수시				변경
32	안동 산	산51-34	도	24	24	공	여수시				
33	안동 산	579-5	대	5	5	공	여수시				
34	안동 산	579-4	도	259	148	공	여수시				
35	안동 산	651-15	도	3	3	공	여수시				
36	안동 산	537-4	임	21,554	1,351	공	여수시				
37	안동 산	537-3	임	1,935	33	공	여수시				
38	안동 산	372-1	전	259	259	김춘호 외12인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의원대로 449, 131동 101호(반림동, 노블파크아파트)				기정
	안동 산	372-1	전	259	259	공	여수시	공유지 (28/1365)	김용수	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123번길 23-8, 3층 303호(쌍촌동)	변경
39	안동 산	산16-13	임	98	98	백태슬	전라남도 여수시 안산5길 9-13(안산동)				기정
	안동 산	산16-13	임	98	98	공	여수시				변경
40	안동 산	산16-14	임	1,686	1,686	김철영	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 33, 103동 4303(우동,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)				기정
	안동 산	산16-14	임	1,686	1,686	공	여수시				변경
41	안동 산	573-1	전	2,033	2,033	김철영	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 33, 103동 4303(우동,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)				기정
	안동 산	573-1	전	2,033	2,033	공	여수시				변경

연번	토지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면적(㎡)	편입면적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권리내용	성명	주소	
42	안동 산	579-3	대	9	9	공	여수시				
43	안동 산	579-6	도	4	4	공	여수시				
44	안동 산	651-14	도	13	13	공	여수시				
45	안동 산	580-3	대	11	11	김효수 외1인	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614				기정
	안동 산	580-3	대	11	11	공	여수시				변경
46	안동 산	577-1	대	123	123	공	여수시				
47	안동 산	573-4	전	28	28	김철영	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 33, 103동 4303X(우동,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)				기정
	안동 산	573-4	전	28	28	공	여수시				변경

공 고

「여수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24일

여 수 시 장

「여수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- 현 조례의 대규모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은 [단위사업비×수돗물사용량] 로 규정하고 있음
- 대규모개발사업 중 현지 여건상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시설의 신설·증설등의 사업비가 원인자부담금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음
-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적용시 부과금액 보다 실 소요공사금액이 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에 규정한 취지에 적합하게 산정기준을 개정
-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단서 조항 신설

- 원인자부담금과 *총사업비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
*총사업비함은 대규모개발사업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배수지, 가압시설, 관로 등을 위한 실소요공사비용

2. 개정 조례안 : 붙임

3. 입법 예고기간 : 2025. 7. 24. ~ 8. 12.(20일간)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5년 8월 12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
다. 기재내용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의견

라. 제출기관 : 여수시장(상수도과)

- 주 소 :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8,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 4층
- 팩 스 : 061-659-5859
- 전자메일 : han10sb@korea.kr

5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상수도과(☎061-659-49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「여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그 밖의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여수시 조례 제 호

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(제6조제1항 관련)

○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

$$\text{원인자부담금} = \text{단위사업비(총사업비/시설용량)} \times \text{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}$$

1.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를 말한다.
 - 가.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(원수시설, 정수시설, 송수시설, 배수시설)에 대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
 - 나. 제5조 제1항 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.

구 분	금 액
단위사업비(m ³ /일)	1,999,000

단, 원인자부담금과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.

* 총사업비함은 대규모개발사업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배수지, 가압시설, 관로 등을 위한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							
[별표2]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(제6조제1항 관련) ○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= 단위사업비(총사업비/시설용량) ×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1.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㎥당 사업비를 말한다. 가.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(원수시설, 정수시설, 송수시설, 배수시설)에 대한 수돗물 1㎥당 사업비 나. 제5조 제1항 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.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금 액</th></tr><tr><td>단위사업비(㎥/일)</td><td>1,999,000</td></tr></table>		구 분	금 액	단위사업비(㎥/일)	1,999,000	[별표2]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(제6조제1항 관련) ○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= 단위사업비(총사업비/시설용량) ×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1.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㎥당 사업비를 말한다. 가.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(원수시설, 정수시설, 송수시설, 배수시설)에 대한 수돗물 1㎥당 사업비 나. 제5조 제1항 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.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금 액</th></tr><tr><td>단위사업비(㎥/일)</td><td>1,999,000</td></tr></table> 단, 원인자부담금과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. * 총사업비함은 대규모개발사업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배수지, 가압시설, 관로 등을 위한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.			구 분	금 액	단위사업비(㎥/일)	1,999,000
구 분	금 액											
단위사업비(㎥/일)	1,999,000											
구 분	금 액											
단위사업비(㎥/일)	1,999,000											

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(안) 공람공고

1. 여수시 덕충동 940번지 일원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(안)을 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밖에 본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합니다.
2. 본 사업시행계획인가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고 기간 내에 우리시 허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계서류는 여수시청 허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5. 7. 25.

여 수 시 장

1. 공람기간 : 2025. 7. 25.(금) ~ 2025. 8. 8.(금)
2. 공람장소 : 여수시청 허가과 (☎ 061-659-4098)
3. 공람내용

가. 정비사업 명칭 :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1) 위치 :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940번지 일원
- 2) 면적 : 28,418㎡(대지 27,715㎡, 도로 703㎡)

다.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 성명 :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김하식)
- 2) 주소 :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5, 덕충주공아파트 단지 내 상가3호
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
마. 건축계획 및 규모

대지면적	건폐율	용적률	층수(높이)	용도(연면적)	주택규모
27,715㎡	21.74%	221.95%	지하7층/ 지상18층 (51.7m)	아파트 9개동 534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 (99,534.9963㎡)	59형 56세대 84형 401세대 102형 45세대 109형 32세대

바. 토지이용계획

구분	명칭	면적	비율	비고
총계		28,418㎡	100%	
정비기반 시설 등	소계	703㎡	2.47%	
	도로	703㎡	2.47%	
획지	소계	27,715㎡	97.53%	
	획지	27,715㎡	97.53%	공동주택

4. 의견서 제출방법 : 사업시행계획인가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수시청 허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확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

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후 영업소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여수시청에 영업신고 사항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(허가취소 등)에 따라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행정처분명령서 및 행정처분확정 알림 공문을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25일

여 수 시 장

- 1. 제 목 :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확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
- 2. 공고기간 : 2025. 7. 25.(금) ~ 2025. 8. 11.(월) (17일간)
- 3. 행정처분확정일자 : 2024. 6. 23.(월)
- 4. 근거법규 :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4항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
- 5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

업종	업 소 명	대표자	영업소 소재지	위반사항	행정처분내용
일반 음식점	케이오 스튜디오	임**	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3길 30-4	사업자등록증 폐업 후 영업신고사항 폐업신고 미이행	직권말소
	서양 요리	주**	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459	사업자등록증 폐업 후 영업신고사항 폐업신고 미이행	직권말소
	조롱박	김***	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3길 14	사업자등록증 폐업 후 영업신고사항 폐업신고 미이행	직권말소

- 6. 고지사항
 - 만일 영업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7. 문의사항: 여수시 식품위생과 이순형(☎061-659-4229)

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확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(영업허가 등)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(시정명령)에 따라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행정처분명령서 및 행정처분확정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25일

여 수 시 장

- 제 목 :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확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 : 2025. 7. 25.(금) ~ 2025. 8. 11.(월) (17일간)
- 행정처분확정일자 : 하단 참조
- 근거법규 :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, 제71조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
-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

업종	업 소 명	대표자	영업소 소재지	위반사항	행정처분 확정일자	행정처분내용
일반 음식점	골목포차	최**	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2길 8	옥외영업신고 기준 위반	2025. 6. 30.	시정명령/ 시정기간 2025. 7. 11.(금)
	봉계상회	강**	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682-25	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	2025. 6. 30.	시정명령/ 시정기간 즉시
	치킨마루 (여수봉계점)	소**	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682-25	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	2025. 7. 4.	시정명령/ 시정기간 즉시

6. 고지사항

-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니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재적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중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.
- 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7. 문의사항: 여수시 식품위생과 이순형(☎061-659-4229)

전문건설업 등록 공고
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1. 상호 및 대표자 : 주식회사신아이노텍(천*아)
- 2. 영 업 소 재 지 : 전남 여수시 봉계3길 51-19, 3층
- 3. 법인 등록번호 : 206211-0078854

업종명	등록번호	주력분야	등록일
상·하수도설비공사	여수-25-아-01	상하수도설비공사	2025. 7. 25.

2025년 7월 25일

여 수 시 장

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

「수산업법」 제14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-

면허 번호	연장 허가 번호	어업의 종류 (양식방법)	면적 (ha)	어장 위치	면허기간	연장허가 기 간	어 업 권 자		비고
							주 소	성 명	
10110	2025- 65	정치망어업	2.5	만흥동	2015.08.28. 2025.08.27.	2025.08.28. 2035.08.27.	여수시 만성리길 **	신*호	

문의전화 : 061) 659-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. 끝.

2025. 07. 25.

여 수 시 장

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

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7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-

연장 허가 번호	면허 번호	양식업의 종류 (양식방법)	면적 (ha)	양식장 위치	면허기간	연장허가 기 간	양 식 업 권 자		비고
							주 소	성 명	
2025-66	11654	수하식 (수하연식)	6	돌산 우두	2015.08.13.- 2025.08.12 (10년)	2025.08.13.- 2035.08.12 (10년)	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 **	김*남외8	
2025-67	11655	수하식 (수하연식)	8	돌산 우두	2015.08.13.- 2025.08.12 (10년)	2025.08.13.- 2035.08.12 (10년)	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**	박*화외14	
2025-68	11657	수하식 (연승식)	3	삼산 서도	2015.08.19.- 2025.08.18 (10년)	2025.08.19.- 2035.08.18 (10년)	여수시 삼산면 서도리	서도어촌계	

문의전화 : 061) 659-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. 끝.

2025. 07. 25.

여 수 시 장

공고 제2025-2248호

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

「도로법」 제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28일

여 수 시 장

허가번호	제2024-121-2호	피허가자	에이치디오션리조트(주) 대표이사 유광현	
점용의 목적	상수관로 매설	점용기간	일시	2024. 12. 1. ~ 2025. 7. 31.
			장기	2025. 8. 1. ~ 2034. 12. 31.
점용의 장소	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275번지~241번지	점용면적	일시	876.12㎡ L=148.0m, B=1.33m 차도(아스콘) L=480.0m, B=1.33m 보도
			장기	106.79㎡ L=148.0m(D90mm) 차도(아스콘) L=480.0m(D90mm) 보도 B=1,100mm, L=2,000mm(D1,100mm) 맨홀(7ea)
점용물의 종류	상수관로 매설			
공사 방법	인력 및 기계 굴착	굴착 시 교통대책	우회차로 및 안전시설	
도로의 복구방법	원인자복구	도로굴착	원인자 굴착	

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공모(기간연장)

공동주택 단지 내 전기차 전용주차(충전)구역 등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「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 지원사업」 공모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(기간연장)합니다.

2025년 7월 28일

여 수 시 장

1. 사업기간 : 2026. 1. ~ 2026. 12.

2. 신청서 접수 및 장소

가. 접수기간 : 2025. 7. 14.(월) ~ 2025. 8. 12.(화) - 기간연장

나. 접수장소 : 여수시청 건축과 ※ 방문 및 우편 접수

다. 접수방법

1)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제출

※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아닌 소규모 단지는 입주자 내부 회의를 거쳐 제출

2) 접수시 비치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, 접수대장에 작성된 신청건만 유효함(우편접수는 유선으로 접수 확인 필요)

3. 지원대상 및 조건

가. 지원대상 :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

※ 해당 공모는 「여수시 공동주택 조례」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기 지원받은 공동주택도 신청 가능

나. 지원조건 : 1) 사업비의 10% 이상 자부담

2) 공동주택 단지 당 3~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
※ 지원조건 1), 2) 모두 충족 필요

4. 지원 제외 대상

가. 용도변경 등 허가를 득해야 하는 시설로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

나.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

다. 그 밖에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등 관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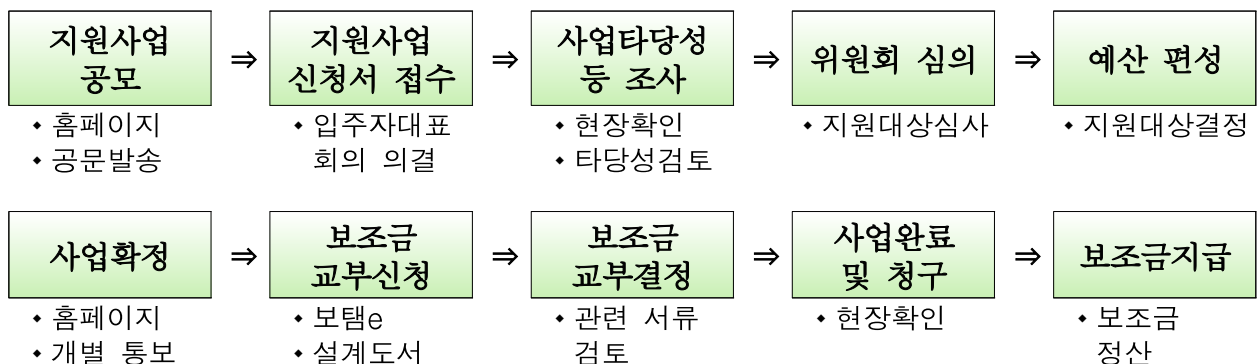
5. 지원 내용

가. 전기차 전용주차(충전)구역의 화재예방(자동화재 탐지, 화재알림 설비 등) 및 조기진압 위한 소방설비(소화설비 등) 설치사업

ex) 불꽃감시용 CCTV, 방화벽, 물막이판, 상방향 직수장치, 질식소화덮개 등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에 적용성이 있는 시설 및 장비 등

나. 화재예방용 충전시설로 교체·보완 및 전기차충전구역 이전설치 사업 등

6. 지원 절차



7. 지원사업 결정

- 가.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금액이 조정·변경될 수 있음

8.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
- 가. 신청방법 :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신청

- 나. 구비서류

- 1)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(서식 1)
- 2) 사업계획서 1부(서식 2)
- 3) 사업의 성실 추진 서약서 1부(서식 3)
- 4)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체평가서 및 근거 서류
- 5) 입주자대표회의(자치회)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(회의록 등)
- 6) 사업비 산출 근거(견적서·비교견적서 또는 설계도서)
- 7) 소방 안전시설 등 설치장소(도면, 현장사진 등)

9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·제출하여야 하며, 기재내용 및 제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- 나. 지원단지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단지 결정을 취소합니다.
- 다. 접수 기간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, 수정, 보완 등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「여수시 공동주택 조례」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마.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여수시 공동주택 조례」 및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·처리됩니다.
- 바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건축과(☎061-659-409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서식 1]

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(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 지원사업)					
단 지 명				동 수	
주 소				연락처	
준공연도				총주차대수	
전기차 충전(주차) 구역/대수	지상:	구역 /	대(면)	전기차 충전기 수	급속: 개(대)
	지하:	구역 /	대(면)		완속: 개(대)
지 원 신 청 내 용					
사 업 명	사업비(단위 : 천원)			사업기간	
	총 계	지원신청액	자부담	착수예정일	완료예정일
총 계					
「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(서명 또는 인) 관 리 사 무 소 장 (서명 또는 인)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: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, 사업계획서(현장사진, 사업비 산출 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),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(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), 사업의 성실 추진 서약서,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				

[서식 2]

사 업 계 획 서 (지원신청)						
1. 사 업 개 요	사 업 명					
	사업목적					
	사업기간					
	사 업 비 (단위:천원)	합 계	지원신청액	자 부 담	자부담률(%)	
2. 사 업 내 용	○ ○					
3. 사 업 비 산 출 기 초	○ 별지 작성 가능					
4. 보조금 조달 계 획	부 담 자 명					
	부담자 주소					
	부 담 금 액					
	부 담 방 법					
5. 보조사업효과						
6.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	▶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.					
7. 이 전 보조사업 실적	사 업 명				지원연도	
	사 업 비	천원	보 조 금	천원	자 부 담	천원
	사업효과					

사 업 의 성 실 추 진 서 약 서

위 공동주택 지원사업(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) 지원 신청 및 선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, 지원사업으로 선정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서약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(서명 또는 인)

관 리 사 무 소 장 (서명 또는 인)

여수시장 귀하

공동주택 지원사업 자체 평가서(조례 제4조제2항 관련)

평가구분	평가항목	배 점	자체평가
관 리 투명성	■ 내·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(의무)	여 5 부 0	
	■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(의무)	여 5 부 0	
	■ 사업자 선정 시 경쟁 입찰 도입 여부(의무)	여 5 부 0	
시책이행	■ 전라남도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(의무)	여 5 부 0	
	■ 지자체 시책(에너지절약, 재활용품, 음식물폐기물 등) 이행	여 5 부 0	
	■ 경비원 업무 협약 체결(의무)	여 5 부 0	
가 점 (5 점)	■ 자체 소방대편성 및 훈련 시행 여부	여 o 부 x	

※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관리의 투명성, 시책이행 평가항목 중 (의무)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“여” 로 평가한다.

※ 증빙 서류 미제출 시 배점 제외됨

년 월 일

입주자대표회의 회장

(서명 또는 인)